

고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856호)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 | |
|--------------------------------|---------------|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4. 4. 16 | 고 성 군 수 |
| 나. 회 부 일 자 : 2004. 4. 20 | |
| 다. 상 정 · 의 결 일 자 : 2004. 4. 28 | 총무위원회 상정 · 의결 |

2. 개정사유

- 2003. 5. 9 시행된 표준정원제 운용 및 2004년도 지방공무원 충원확대 계획에 의거 보정정원을 활용함으로써 우리군의 이미지 마킹을 위한 2006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보정정원의 범위 내에서 균형있는 인력수급과 조직을 관리하고 행정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일과 기능중심의 경쟁력있는 조직운영을 위하여 고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일부 개정코자 함.

3. 주요골자

- 가.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30명을 증원함(안 제2조)

구 분	현 행	조 정	증 감
○. 총수	605명	635명	30명
1. 집행기관의 정원	591명	621명	30명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14명	14명	0명

4.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 고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3.5.9 시행된 표준정원제 운용 및 2004년도 지방공무원 충원확대 계획에 의하여 보정정원의 범위 내에서 균형있는 인력수급과 조직을 관리하여 2006경남고성공통세계 엑스포 개최 등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일과 기능 중심의 경쟁력 있는 조직운영을 위하여 관련 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 본 개정조례안이 낭비적이고 불요불급한 인력책정은 없는지와 구체적인 고성군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등에 대하여 제출자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깊이 있게 심사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음.

5. 질의 및 답변

- 문 : 경남고성공통세계엑스포가 끝나면 사무국 직원 정원은 어떻게 되는가?
- 답 : 공통엑스포가 끝나더라도 정원은 변경이 없으나, 공무원 파견근무 현원은 탄력적으로 운용할 계획임.

6. 토 론 : 없음

7. 심사결과

- 2004. 4. 28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